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1263호
- 발 의 자 : 이상목 의원(찬성자 10명)
- 발의일자 : 2016년 6월 9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10일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도 서울공예 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이들 박물관에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건립 추진중인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근거 및 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로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권고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유물취득 ·관리 표준규정 마련 협조” 등 유관기관의 표준규정 마련 요청이 있었음.
- 따라서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의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존 “유물”로 한정된 전시자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한 “박물관자료”로 확대 정의하고 자료 수집관련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구입·기증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자료관리관 등 지정을 포함한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자료의 망실,도난,훼손 등의 변상책임을 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기존의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중에 있어 이들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의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제정안임.

나. 제정의 필요성

- 서울시는 봉제박물관, 돈의문전시관, 시민생활사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는 예외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 또는 기증을 허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시행령: 국가·지자체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않은 법인·단체는 가능)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시행령: 1.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설립목적에 위해 직접 필요하여 기부심사위

원회를 거친 경우 가능 2. 단순히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가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건립 추진중인 박물관과 기존의 박물관의 원활한 자료수집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증 사례비 및 전시자료 구매 예산 등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권고('14.8)에 따라 전시자료 취득·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시자료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각각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해하므로 향후 건립 추진이 예정된 박물관을 포함하여 서울시 전체에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다. 조례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건립 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16개 조에 걸쳐, 목적, 정의, 자료수집,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근간으로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의 체계 및 구성 비교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비고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제3조	자료구입	유물수집대상	
제4조	자료기증	유물구입	
제5조	자료의 기탁 등	유물기증	
제6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유물기탁 등	
제7조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	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제9조	수당 등 지급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제10조	자료관리관 등 지정	구입대상유물 최종심의	
제11조	자료의 관리	수당 등 지급	
제12조	수장고	유물관리관 등 지정	
제13조	자료의 대여 등	유물의 관리	
제14조	변상책임	유물수장고	
제15조	권한의 위임	유물의 대여 등	
제16조	시행규칙	변상책임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8조		시행규칙	
부칙			

-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두고 있음.
- 동 조례안의 경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료구입), 제4조(자료 기증), 제5조(자료의 기탁 등) 5개 조가 총칙규정이고 나머지 11개 조가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3장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와 “제4장 자료의 관리”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자료구입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칙 제2조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도록 함.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조례안의 목적 또는 취지를 규정한 목적규정은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에서 서울특별시가 건립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기존의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는 적용 대상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건립될 서울시의 여러 박물관과 기존의 운영중인 한성백제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건립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 조례안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정의한 “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항에서 정의한 “박물관자료”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규정의 비교>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비고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 “박물관자료”는 법 제2조제3호의	1. "유물"이라 함은 보존 및 전시가	“유물”로

<p>자료를 말한다.</p>	<p>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p>	<p>한정된 전시자료를 “박물관자료”로 확대함</p>
<p>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유물”을 “자료”로 대체함</p>
<p>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p>		<p>신설</p>
<p>5.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p>		<p>신설</p>
<p>6. “출납”이라 함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p>	<p>3. “출납”이라 함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 사항을 말한다.</p>	
<p>7. “수장고”라 함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p>	<p>4. “수장고”라 함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p>	
<p>8. “대여”라 함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p>	<p>5. “대여”라 함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p>	
<p>9. “열람”이라 함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p>	<p>6. “열람”이라 함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p>	
<p>10. “복제”라 함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p>	<p>7. “복제”라 함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p>	

- 제3조(자료 구입)은 기존의 구입, 기증, 기탁 이외에 추천 및 경매에 의한 자료 구입 방법을 추가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박물관자료 수집이 가능해짐.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3조(자료구입)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개별 박물관 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의 최종의결을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 제4조(자료기증)은 자료기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유물기증)을 준용함.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4조(자료 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무상기증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기탁 등)은 박물관자료 기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유물기탁 등)을 준용하였으며,

기탁 등의 출처를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신설하고,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서 위임받아 보관하는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한 경우 개별 박물관별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하고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도록 신설함.

이는 임시로 박물관 자료를 보관할 때에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수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무분별한 자료 보관을 방지하여 수장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및 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는 각각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제9조(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제10조(구입대상유물 최종심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한 개별 박물관별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제10조(자료관리관 등 지정)에서 제14조(변상책임)까지의 5개 조문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전시자료의 관리를 위해 수장고 관리, 자료의 대여 방법 및 자료의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상책임에 관한 근거조항 등을 규정하여 전체 서울시 박

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항임.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동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여, 향후 동 조례안의 제정 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운용에 관한 통합조례로써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의 적용대상인 ‘서울역사박물관’ 뿐 만 아니라 향후 건립추진 중인 서울시 문화시설의 전시자료 수집 및 근거가 될 것이며, 기존의 “유물”로 한정된 전시자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한 “박물관자료”로 확대 정의함에 따라 폭 넓은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 건립되는 박물관의 운영을 위해 각각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해하므로 동 조례안은 향후 건립 추진이 예정된 박물관을 포함하여 서울시 전체에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례로 판단됨.

〈붙임1〉 서울시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

〈붙임2〉 공립박물관 유물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안)마련 및 자료관리 철저 협조 공문

〈붙임3〉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구입 절차

〈붙임4〉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구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

〈붙임5〉 제7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명단

<붙임1> 서울시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

I 서울시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

총 15개 시설중 준비단계 2, 행정단계 9, 설계단계 4

- 사업준비 중 : 부지검토(풍납토성야외뮤지엄, 한양도성박물관)
- 행정절차 중 : 투자심사 준비중(삼청각'전통食문화복합공간'조성), 타당성준비중(로봇박물관), 타당성 용역중(서서울미술관, 창작연극시설), 타당성 용역완료(사진미술관), 투자심사(서울공예박물관, 클래식콘서트홀), 투자심사완료(돈화문민요박물관, 평창동미술문화복합시설)
- 설계실시 중 : 기본설계중(시민생활사박물관), 기본설계 완료(돈의문전시관), 설계공모 완료(봉제박물관), 실시설계 완료(백남준기념관)

연번	사업별	소요예산 (백만원)	주요공정										규모 (㎡)	운영주체	
			검토 중	계획 수립	부지 확보	타당 성	투자 심사	설계 용역	전시 설계	건축 공사	전시 공사	완공			개관
	총액	537,386													
1	시민생활사 박물관	19,999						기본 설계					'18.9	6,322	서울역사박물관
2	돈의문전시관	3,000						기본설계 완료					'17.4	1,348	서울역사박물관
3	봉제박물관	2,514						설계공모 완료					'17.12	499	미선정
4	백남준기념관	661				-	-	실시설계 완료					'16.10	93	서울시립미술관
5	평창동미술 문화복합시설	13,228						투심 완료					'19	4,061	서울시립미술관
6	돈화문 민요박물관	8,500						투심 완료					'18	1,453	세종문화회관
7	클래식콘서트홀	191,200						시투심 완료					'20	21,382	미선정
8	서울공예박물관	160,282						시투심 2단계					'18.9	9,957	미선정 (시 직영 예정)
9	사진미술관	21,550					완료						'20.4	9,570	서울시립미술관
10	서서울미술관	25,000					진행중						'21.12	7,000	서울시립미술관
11	창작연극시설	21,733					진행중						'19	5,521	미선정
12	로봇박물관	38,000					준비중						'21	6,500	시립과학관
13	삼청각'전통食문화복합공간'조성	31,719				-	-	투심 준비중					'18.6	103,000	미선정
14	한양도성박물관	미정	진행중										-	미정	서울역사박물관
15	풍납토성 야외뮤지엄	미정	진행중										-	미정	한성백제박물관

〈붙임2〉 국립박물관 유물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안)마련 및 자료관리 철저 협조 공문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립박물관 유물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안) 마련 및 자료관리
철저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716(2014.9.3.) 관련입니다.
3. 국립박물관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법령 규정(안) 마련을 위해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예규'를 전파 하오니 각 광역단체에서는 동 예규를 참조, 자체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기 제정한 지자체는 제외)을 우리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2년 대비 2013년 소장자료 감소분에 대한 검토 및 조치의견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보완·수정이 필요한 국립박물관은 내용을 확인, 재 제출 해주시기 바라며, 소장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문화유산 DB구축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 및 소장자료 감소분 검토 및 조치의견에 대한 지자체 조치계획

○ 제출기한 : 2014년 10월 10일 까지

- 붙임 : 1. 국립중앙박물관 예규편람(140729)(참고)
2. 작성양식(소장자료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
3. 작성양식(조례 제·개정 현황 및 향후계획). 끝.

〈붙임3〉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구입 절차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구입 절차

입수경로별 구입 구분

- 공개구입 : 매년 1~3회 정기 운영
- 현지구입 : 현지구입에 적합한 유물에 대해 수시 추진
- 경매구입 : 소장유물로 적합한 구입대상의 경매 출품시 추진

※ 유물구입절차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진함

공개구입 절차

연번	절 차	세부 내용
1	구입 대상 분야 선정	- 전시계획 및 유물수집계획에 따라 구입 분야 선정
2	유물구입 공고 매도신청 접수	- 공고매체 : 서울시보, 일간지, 박물관 홈페이지 등 - 매도신청자료 접수
3	유물수집실무위원회	- 구입대상 적합 여부 평가 - 박물관 유물수집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4	실물 접수	- 구입 대상 유물 실물 접수
5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 유물 진위여부, 가치판단, 가격 선정 - 학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6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최종 심의 및 의결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
7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	- 구입예정유물 박물관 홈페이지 화상 공개 - 문화재청, 각 시·도 문화재 담당부서 확인
8	유물 구입 계약	- 매도신청자별 수의계약

현지구입 절차

연번	절 차	세부 내용
1	구입 대상 조사	- 현지구입 대상 유물에 대한 자료 조사
2	유물수집실무위원회	- 구입분야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3	유물평가위원회	- 전문가 3인 이상이 유물진위·가격 평가
4	유물 구입 계약	- 구입 계약 체결

경매구입 절차

연번	절 차	세부 내용
1	경매도록 접수	- 경매 개최 내역 파악 - 경매구입 대상 유물 조사
2	유물수집실무위원회	- 경매도록 검토 - 평가대상유물의 선정(응찰 유물)
3	유물평가위원회	- 유물의 진위 및 응찰한도액 평가, 응찰여부 결정 - 학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4	응찰 / 유물구입계약	- 경매회사와 수의계약

〈붙임4〉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구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구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 수집실무위원회

-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유물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제6조, 3항)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유물수집 기간에 학예연구부장과 각 과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함
- 위원장 : 관장
위원: 학예연구부장(박현욱), 전시과장(박상빈), 교육대외협력과장(허대영), 조사연구과장(정명아), 유물관리과장(한은희), 보존과학과장(양필승), 한양도성연구소장(최형수), 청계천박물관장(사종민).

○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한다.(제7조 2항)
- 평가위원은 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당해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제7조 3항)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해당 전공의 각 대학 교수, 문화재 위원. 기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5인을 위촉하여 운영함.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개별 박물관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제8조)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제7대 운영자문위원 18인이 유물구입 때에 최종심의를 하고 있음.

〈붙임5〉 제7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명단

제7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명단

(2015.1.1 ~ 2016.12.31)

구 분	성명	출생연도 (성별)	현소속(직위)	전문분야	유임 /신임	비 고
	정옥자 (위원장)	1942 (여)	•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조 선 사	유임	010-8566-8211 ojjung@snu.ac.kr
	정재정	1951 (남)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근 대 사	유임	010-5667-9850 02)6490-2557 (한성백제 박물관자문위원) chungjj@uos.ac.kr
	최종현	1946 (남)	• 한양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통의도시연구소장	도 시 사	유임	02)733-0417 ccphjhc@gmail.com
	김기호	1952 (남)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 시	유임	010-9138-2436 02)6490-2795 keyhow@uos.ac.kr
	이석정	1955 (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도시건축	유임	010-2647-9824 02)880-5826 seogjeong@snu.ac.kr
	김종현	1962 (남)	• 배재대 건축학부 교수 • 배재대 역사박물관장 겸 학술지원센터장	건 축 사	유임	010-5206-5521 02)520-5634 kjh628@pcu.ac.kr
	최정필	1945 (남)	• 세종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 문화재위원회 위원	고 고 학	유임	010-4737-3305 02)3408-3546 choecp@sejong.ac.kr
	조옥라	1950 (여)	•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사 회 학	유임	010-5223-8369 02)705-8369 oaklaa@sogang.ac.kr

구 분	성명	출생연도 (성별)	현소속(직위)	전문분야	유임 /신임	비 고
	이영미	1960 (여)	• 대중문화 평론가	대중문화	유임	010-6302-2752 ymlee0216@hanmail.net
	정성희	1963 (여)	• 동아일보 논설위원	언 론	유임	010-5004-0533 02)2020-0273 shchung@donga.com
	조선희	1960 (여)	• 서울문화재단 대표	영 사 상 진	유임	010-3776-0591 02)3290-7019 sunnyjo@empal.com
	김종규	1939 (남)	•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 문화유산신탁이사장 •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문화기관	유임	010-5222-8922 비서실 02)394-6544 (한성백제박물관자문위원) director@ssmop.org, yakim86@hanmail.net(부 관 장)010-4207-0941
	조 광	1945 (남)	• 서울역사편찬원 위원회 역사자문관 • 고려대 문과대학 명예교수	한 국 사	신규	010-2266-4526 02)413-9593 chokwang@korea.ac.kr
	김수현	1962 (남)	• 서울연구원 원장	도시공학	신규	010-4699-7736 02)2149-1003 shkimsdi@sejong.ac.kr
	송인호	1957 (남)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건 축 학	유임	010-6226-5166 02)6490-2771 inos@uos.ac.kr
	조규영	1965 (여)	• 서울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 의 원	유임	010-9222-5061 02)3783-1536~8 young65627@hanmail.net
	김창희	1958 (남)	• (前)동아일보 국제부장 • 한국인터넷 자유통계기구 정책위원장	언 론	유임	010-8953-0169 insight415@gmail.com
서울역사박물관장(당연직)			• 現 공석 • 직무대리 : 경영지원부장			